

의안번호	2202041
의 퇴 인	여기구의원
회 답 일	2024. 8. 12.
추 계 번호	24B21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3·4·5항 신설(계약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u>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u>(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함)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u>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u>(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u>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한 우대 조치</u>를 할 수 있음(제5항)	의무·재량 규정
2	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제3호의2 신설(가격 예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와 <u>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과 상한가격</u>[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함]을 <u>예시</u>할 수 있음(제1항) ※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에 더하여 ‘상한가격’도 예시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4항)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의무·재량 규정
3	안 제9조제1·4항(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음</u>.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음(제1항) ※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는 경우를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에서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변경하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u>(제4항) ※ 수급안정 사업 대상을 ‘채소류 등’에서 ‘농산물’로 변경하는 것임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의2 신설(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1.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 2. 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 3.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용권 지급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재량규정
5	안 제16조의2 신설(농산물가격안정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u>시장가격이 기준가격</u>[평균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 <u>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u>(이하 “<u>농산물가격안정제도</u>”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u>심의위원회</u>”라 함)를 둔다(제1항) 1. 대상 품목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3. 차액의 지급비율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5.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시행의 주기 6. 제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의 선정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의무규정
7	안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2호의3 신설(기금의 용도)	<u>기금</u>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u>지출함</u>(제2항) 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시책을 추가하는 것임 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의무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제3·4·5항 신설(계약생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2 신설(가격 예시)	
3	안 제9조제1·4항(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4	안 제9조의2 신설(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5	안 제16조의2 신설(농산물 가격안정제도)	
7	안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2호의3 신설(기금의 용도)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농산물가격안정심의 위원회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¹⁾에 따라 운영중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활용하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
6	안 제16조의3(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상세 사유

계약생산(안 제6조제3·4·5항 신설), 가격 예시(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제3호의2 신설),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안 제9조제1·4항),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안 제9조의2 신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안 제16조의2 신설) 및 기금의 용도(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생산 관련 단체 및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의 상한가격을 예시하며,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즉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²⁾의 용도에 계약생산 및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등에 따른 지출을 추가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농산물 기준가격)**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 특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상 농산물 품목,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생산량, 지급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주요 농산물 품목 가격하락분 차액 지급액}_{i,t})$

$$= \sum_{i,t} [(\text{품목별 기준가격} - \text{품목별 시장가격})_{i,t} \times \text{품목별 생산량}_{i,t} \times \text{품목별 지급비율}_{i,t}]$$

- 이때 (품목별 기준가격 - 품목별 시장가격) > 0인 경우에 해당
- t는 추계기간 5년, i는 주요 농산물 품목(채소, 과일 등)

2) 법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수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그러나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보장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³⁾ 구체적 지원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현시점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생산 관련 단체 및 생산자의 손실 규모, 보전대상 품목 및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며,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손실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⁴⁾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을 통해 계약재배 관련 사업을 추진중임

※ [참고자료 1]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채소가격안정제 등) 관련 사업 현황

※ [참고자료 2]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참고

3) 안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4) 안 제6조(계약생산)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우대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채소가격안정제 등) 관련 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계약재배 관련 사업 및 개요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수급안정지원) 노지채소·과수·과채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및 수급 안정 도모
- (발식량작물수매지원)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발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두류·맥류계약재배) 두류·맥류 재배농가 등 실수요업체의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소비기반 확대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채소가격안정지원) 노지채소류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면적조절, 출하정지, 조기출하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전, 출하장려금, 산지폐기 비용 등 지원

□ 계약재배 대상 주요 농산물 품목

- 수급안정지원: (노지채소)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감자, 당근, 양배추 / (과수) 사과, 배, 감귤, 단감 / (과채) 오이, 호박, 풋고추, 가지, 토마토
- 발식량작물수매지원, 두류·맥류계약재배: 콩, 팥, 녹두, 밀 등
- 채소가격안정지원: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감자

□ 하한가격 결정 절차 및 주요 농산물별 하한가격 예시

○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9호)

-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
-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함

□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 관련 예산 현황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 관련 예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산지유통 종합자금 (융자) (3033-304)	수급안정지 원	노지채소(9개 품목), 과 수(4개 품목), 과채(5개 품목)의 계약재배 소요자 금 지원	302,072	340,506	359,924	323,932
	발식량작물 수매지원	발식량작물 수매자금 지 원	9,349	8,930	8,484	8,484
	두류·맥류 계약재배	두류·맥류 계약재배 농 가 등 대상 소요자금 지 원	44,948	39,806	40,912	23,666
	소계		356,369	389,242	409,320	356,082
농산물생산 유통조절지 원 (3031-326)	채소가격안 정지원	노지채소 계약재배 농업 인 등에게 수급의무를 부 여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 전, 출하장려금, 산지폐 기 비용 등 지원	34,063	40,443	55,190	55,190
	유통협약·명령 지원	유통협약·명령 이행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경비 및 부대 비용 지원	—	445	445	400
	소계		34,063	40,888	55,635	55,5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입경과) 계약재배만으로는 **농가의 소득안정 및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이 어려워 **노지채소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16년부터 도입

(단위: 억원)

구분	'16년(시범)	'17	'18	'19	'20	'21	'22	'23	'24
신규 대상품목	배추 (여름,겨울), 무(겨울)	배추·무 (全작형), 양파, 마늘	고추, 대파	—	감자	—	—	—	—
예산(억원)	35	100	168	186	241	340	451	552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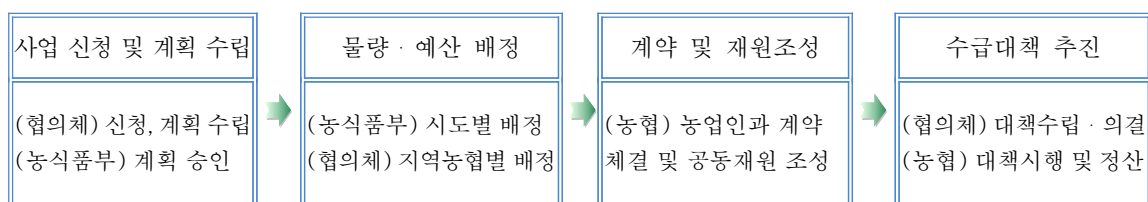
- (주요내용) 농업인 또는 농협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평년가격 대비 하락시는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의무 사항)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생육단계 폐기), 출하정지, 출하조절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
 - (과잉시) 가입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이행,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 방지
 - (부족시) 가입물량의 50%까지 출하시기 조절,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
- (지원 사항) 공동재원*을 활용해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 지원하고, **평년 가격의 최대 80%** 수준 보장

*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

** (출하前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 소요된 생산비 수준, (출하조절) 운송비·작업비

- (추진체계) 지자체·농협·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수급대책 수립·추진



1 가격차보전: 22년산 제주 조생양파

- (보전방법) 당해연도 도매시장(가락시장) 거래가격이 5년 평년가격(기준가격)의 80% 수준(보전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보전

	◀ 기준가격: 가락시장 5개년 평년가격(가장 높은 · 가장 낮은 가격 제외)
	◀ 보전기준가격: 기준가격의 80%
보전금액	◀ 거래가격: 가락시장 경락가격
	◀ 최저기준가격: 기준가격의 60%

- 보전산출방식: 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보전기준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사업비에서 보전

- (보전사례) 제주 조생양파('22. 3월 하순~5월 상순, 8,541톤/420백만원)

- '22년산 재고량 이월, 조생종 생산량 증가로 4월 상품 도매가격은 평균 611원/kg, 평균가 471원(전년비 39%↓, 평년비 32%↓)

(단위:원/kg)

순기별	시장가격(도매가격)					농가 수취가*	생산비 경영비	보전기준 가격(80%)	최저기준 가격(60%)	차액 (보전단가)
	특	상	중	하	평균					
3월 하	618	393	256	160	303	233	434	794	595	199
4월 상	841	492	289	146	359	271	309	781	586	195
5월 상	666	551	478	335	484	372		577	433	93

* 농가수취가: 도매평균가격-출하제비용(상장수수료 포함)을 제외한 금액

* 시장평균가격이 최저기준가격보다 낮더라도 보전 기준가격과 최저기준가격 차액만 보전

2 출하정지 및 산지폐기: 22년산 제주 조생양파

- (보전방법) 가격하락 시 출하대기 포전을 확정 후, 가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전 정리 및 손실보전

- 보전금액: 보전기준액(기준가격 × 농업인수취율 - 출하비용) × 출하정지 면적

- (보전사례) '22년산 조생양파('22.3.22.~4.30.) 2.3만톤 출하연기(200원/kg 선지원)하고, 제주조생양파 94ha 산지폐기* 실시

* 산지폐기(물량): 94ha(2,643톤), 지원단가: 453원/kg(9,060원/평), 사업비: 1,197백만원

3 출하장려: 22년산 강원 고랭지 배추

□ 고랭지 배추('22. 9월 상순) 위기단계 심각으로 1,468톤(165대), 248백만원 지원

* 배추 도매가격('22.8.29.~8.31.): 19,223원/10kg(상승심각)

* 배추 7~8월 평균: 14,403원

(참고) 22년산 조생양파 기준가격 및 거래가격 산출기준 <순별 산출>

□ 기준가격(평년가격): 857원/kg

(단위: 원/kg)

3월 하순	4월 상순	4월 중순	4월 하순	5월 상순
992	976	863	732	721

* 산출기준: 가락시장 등급별 물량비를 반영한 **가중평균**의 5개년 평년가격
(평년가격: 최대년, 최소년 제외한 3개년의 평균가격)

* 가락시장 등급별 물량비(양과 품목) : 특(5%), 상(35%), 중(40%), 하(20%)

예) '16.7 등급별 가격(특품 814, 상품 723, 중품 591, 하품 409)

가중평균은 $612(=814 \times 5\% + 723 \times 35\% + 591 \times 40\% + 409 \times 20\%)$

□ 보전기준가격(차액보전의 기준): 686원/kg

(단위: 원/kg)

3월 하순	4월 상순	4월 중순	4월 하순	5월 상순
794	781	690	586	577

* 산출기준: 기준가격 $\times$ 80%

* 보전기준가격은 보장가격이 아님. 평년가격과 당해연도가격과의 차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임

□ 최저기준가격: 514원/kg

(단위: 원/kg)

3월 하순	4월 상순	4월 중순	4월 하순	5월 상순
595	586	518	439	433

* 산출기준: 기준가격 $\times$ 60%

□ 시장평균가격(가락시장)

* 순별 가중평균: $[\sum\{(\text{해당순기 일자별 등급별 가격}) \times \text{등급별 물량비}\{ \text{특}(5\%), \text{상}(35\%), \text{중}(40\%), \text{하}(20\%) \}]/(\text{해당순기 영업일수})$